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”을 “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유지·관리하고,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,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”을 “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,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”을 “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”으로, “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”를 “공중화장실등의 청결,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”를 “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”을 “주기적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월 1회 이상 수시”를 “수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과 영 제2조 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편의위생용품 및 관리비 지원)”을 “(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편의위생용품 및 관리비를”을 “편의 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, 그 밖의 비용 등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<u>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생상의 편의</u> <u>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</u> <u>용 환경 조성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<u>유지·관리하고,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,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--- ----- ----- <u>유지·관리하여야</u> <u>하며,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</u> <u>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</u> <u>비치,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</u> <u>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</u> <u>여</u> ---.</p>
<p>제5조(설치기준) ①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</u> <u>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범죄 및</u> <u>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</u> <u>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</u> <u>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</u> <u>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</u></p>

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.
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0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대·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
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구청장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-----

--- 공중화장실등의 청결,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지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3. 월 1회 이상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·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,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4조(편의위생용품 및 관리비 지원)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---- 주기적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3. 수시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4.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과 영 제2조 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.

제14조(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)  
-----  
-----  
----- 편의 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, 그 밖의 비용 등을  
-----.